


기안용지

(전화: 731-634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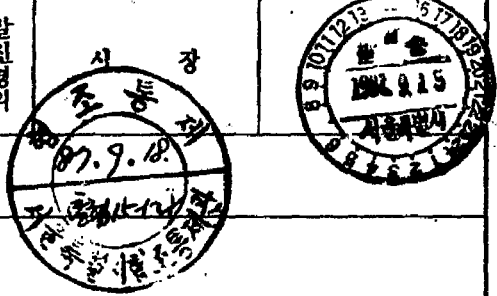
분류기호 문서번호	사설30312- 49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
수신처 보존기간	준영구.
시행일차	87. 9.

시행상 특별취급	시 장
-------------	--------

1987. 9. 15

보조 기관	도시계획국장 전	협조 기관	법무담당관 협조종재공정과장	문서통제 
	시설계획과장			
	시설계획1차장			
기안책임자	이상진 (서명)			발송인
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	발신명의	시 장
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	-------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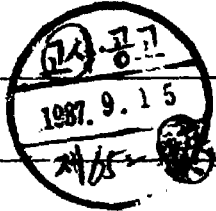
제 목 : 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 결정

(제1안) : 내부결재

1. 제무30310-1497호('87.8.5)와 관련입니다.
2. 위 호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결정

요청된 사항이 우리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('87.8.28)에 상정심의 가결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 고시문 및 도면과 같이 결정 고시 하고자 합니다.

첨부 : 1. 관계서류 1건.



2. 고시문 및 도면 각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: 건설부장관
참조 : 도시시설계획과장
제목 : 같음.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이 별첨과 같이 결정되었기 보고 합니다.
첨부 : 고시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(제3안)
수신 : 응무의장관
제목 : 관보게제 의뢰
1. 다음과 같이 관보게제 의뢰합니다.
가. 게재구분 : 고시.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 결정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.
라. 게재내용 : 별첨.
첨부 : 고시본 사본 2부. 끝.
(제4안)
수신 :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.
참조 : 재무과장
제목 : 같음.

도시계획청

1. 제부30310-1497호('87.8.5)와 관련입니다.

2. 위 호로 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 결정 요청하신 사항이 별첨과 같이 고시

되었기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,

3.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승인을 할 수 있도록 아래 도면을 제출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축척 1:51,200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지적승인 코자하는 계획선이

가는 총선으로 표기된 도부 15부.

- 도면상에 작성 및 확인 관계 공무원의 서명날인 표기 바람.

나. 지적승인시 대상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이의 경계와 면적이 명시된 후 지적

승인이 가능하오니, 대한지적공사 강남출장소와 협의하여 작성된 분할예정도 4부.

첨부 : 고시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(계5안)

수신 : 강남구청장

참조 : 도시정비과장

계목 : 같음.

1. 귀구관내 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이 별첨과 같이 고시되었기 통보하니,

도면정리 및 관계과에 통보하여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, 지적승인을 추후 시행후 통보

할 것임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(계6안)

수신 : 수신처 참조 028

제목 : 갑음.

1. 우천시 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이 별첨과 같이 결정되었기 통보하오니, 관련
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수신처 : 서과 - 28, 37, 40, 44, 46, 47, 52, 53, 54, 64.

도시계획법

고 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 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 결정

고시 심사	1987. 9. 15	제 308 호
담당자	김성현	법무담당관

1. 우천시 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7. 9. 15

서울특별시장

○ 시설조사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모(㎡)	비 고
신설	공용의청사	강남구 방배동 637-2일대	53,068	

○ 결정도면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 비치도면과 같음. 끝.

